2023년도

발명교사 인증 시행안내

(1·2급을 중심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발명교사 인증제 법제화 안내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법령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22.12)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22.12)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23-4호, '23.04)

법제화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기존	변경
등급	**마스터**, 1급, 2급	**명인**, 1급, 2급
인증요건	필수 + 선택 3개 中 택2	필수 + 선택 **4개** 中 택2
	*(필수) 발명교육이수실적, 발명교육실무경력 *(선택) 발명대회입상지도, 발명교육강의실적, 연구실적/특허실적,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시험	(1·2급) 필기, (마스터) 구술	좌동
(1급) 서류면제	발명교육 대상 수상자	**삭제**
(2급) 무시험 인증	대학원 발명교육 전공자	**삭제**
유효기간	최초 인증 5년 * 마스터 등급 : 영구	**5년**
유효기간 연장	인증 **만료자 또는 만료예정자** 대상의 **재인증**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	인증 **만료 예정자** 대상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연장
	(재인증 신청)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포함된 해부터**	(유효기간 연장신청)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요건) 필수 1개 + 선택 4개 中 택1 또는 택2	(요건)선택 **6개 中 택1**
	(연장기간) 재인증시 영구인증	**5년** (5년마다 연장 필요)
예비발명교사	발명교사인증서와 동일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별도존재

인증 발명교사의 활용(안)

❶ 인증 발명교사 활동 토대 마련

- 발명교육 관련 컨설팅, 강의, 사업 등에 인증 발명교사의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발명교육협력교원 POOL 구축

❷ 교육청·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적 활용도 제고

- 발명교육센터등에 지도교사로 우선 배치 추천
- 발명교육 교원연수 시 강사로 활용 추천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의 발굴 및 양성

발명교사 인증제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발명교사로 인증

시행 목적
-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 발명교육 시행
- 교사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저변 확대

응시 대상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예비 발명교사 인증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교육대학(교육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

등급별 응시기준

등급	필수요건				선택요건(2항목 충족)				비고
	정교사 자격증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선행 등급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실적	지식재산 능력시험	평가 시험
명인	1급	180시간 (집합교육 90시간이상)	7년	1급 발명교사	30점	40시간	30점	700점	구술
1급	2급	120시간 (집합교육 60시간이상)	3년	-	15점	20시간	15점	600점	필기
2급	2급 (소지 예정자*)	60시간 (집합교육 30시간이상)	-	-	-	-	-	-	필기

※ 소지예정자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제9조제1항 예비 인증에 한정

※ 각 요건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로 함(다만, 명인 등급의 발명교육 실무경력은 최근 15년 이내로 하며, 지식재산능력시험은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응시기준별 인정 범위 (필수 영역)

응시기준		인정범위	증빙자료
필수영역	발명교육 이수실적	❶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지도자 양성 과정 등 발명교육 직무연수	인사기록카드, 교육이수 증명서
		❷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또는 위탁한) 발명(영재)교육 직무연수	
		❸ 종합교육연수원 및 발명교사교육센터 운영 발명교육 직무연수 가. 종합교육연수원(www.kipa.org→지원사업→미래형발명인재양성→종합교육연수원) 나. 국가 지정 발명교사교육센터	
		❹ 원격교육연수원(www.ipteacher.net) 발명교육 직무연수 ❺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발명교육 직무연수	
		❻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발명·지식재산 강의 이수실적 ※ 2급에 한정하며, C학점 이상의 1학점을 15시간 연수실적으로 인정	성적증명서
	발명교육 실무경력	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발명교육 기관(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선도학교, 발명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 발명교사교육센터, 종합교육연수원 등) 근무경력	인사기록 카드, 해당기관 확인서 (발명 교육시수 포함)
		❷ 지식재산일반교과, 발명특허 특성화고 발명교과 지도경력 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발명교육 기관에서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대상 발명(영재)교육·산업재산권 강의 ❹ 일반학교 발명반 및 교내 발명동아리 지도경력 ※ 연간 교육시수 16~34시간 미만(0.5년) / 34시간 이상(1년) ※ (청소년 이하 강의) 1교시(4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으로 인정	

※ 인정기간(1·2급)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2013. 06. 01 이후)

[유의사항]

- 전체 이수 실적 중 등급별 최소 필요한 **필수 집합연수 이수시간**
  - (2급) 60시간 중 집합연수 30시간 이상, (1급) 120시간 중 집합연수 60시간 이상, (명인) 180시간 중 집합연수 90시간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실시간 쌍방향 연수(Zoom 등)는 집합연수로 인정

※ 원격교육시수도 이수 시간의 100% 인정(기존 50% → 변경 100%)

※ 연수명에 발명/지식재산/특허 등 연수내용이 발명교육과 관련되어 유추되지 않는 경우, 연수커리큘럼을 함께 제시 (연수내용 중 발명관련 내용 소명 시 해당시간만 인정)

※ 불인정 : 과학, 수학, 인문, 정보, 영재교육, 저작권교육, 관련 직무연수는 불인정

응시요건의 인정범위(선택요건)

응시기준		인정범위	증빙자료
선택영역	발명대회 입상지도	❶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5점 ❷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주최: 3점 ❸ 공공기관, 대학, 기업체 등 주최: 2점 ※ 해당 연도 동일대회 최대 3건 인정	결과공문, 상장사본 (지도교사 명시)
	발명교육 강의실적	❶ 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성인대상으로 발명(영재)교육·산업재산권 강의 ※ (성인대상 강의) 5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으로 인정	해당기관 확인서, 결과보고 공문, 위촉 공문
	연구·발명실적	❶ 연구대회 등 **가.** 전국규모 연구대회(발명교육 관련 주제) ※ 1등급: 10점, 2등급: 7점, 3등급: 5점 **나.** 시·도규모 연구대회(발명교육 관련 주제) ※ 1등급: 7점, 2등급: 5점, 3등급: 3점 **다.** 전국교원 발명품 경진대회 ※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 7점, 장려상: 5점	선정결과 공문, 상장사본
		❷ 연구보고서 **가.**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결과보고서 ※ 주무교사: 10점, 참여교사: 5점 **나.** KCI 등재지(KCI등재후보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 ※ 제1저자·교신저자: 10점, 공동저자: 5점	결과보고서, 논문게재증명서, 논문 별쇄본
		❸ 산업재산권 등록(발명자) **가.** 특허 등록 ※ 1인: 10점, 2인: 7점, 3인 이상: 5점 **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 1인: 5점, 2인 이상: 3점	등록증 사본
		❹ 학위과정 **가.** 석사학위(발명교육 관련 주제): 15점 **나.** 박사학위(발명교육 관련 주제): 30점	학위증명서 학위논문
	지식재산 능력시험	❶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능력시험 : 600점이상 충족(1급기준, 접수시작일(2023.6.1)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지식재산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인정기간(1급)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2013. 06. 01 이후)

등급별 인증절차

1급·2급 인증절차 (등급별 응시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단 계	내 용	주 체	비 고
① 공고/접수	•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누리집에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 수도권/강원 : 한국발명진흥회 • 중부권/충청 : 충남대 • 호남권/제주 : 전주교대 • 영남권/부산 : 부산교대
② 응시요건 심사	• [서류심사] 등급별 응시요건 검토 • [평가시험] 대상자(응시요건 충족자) 통보		
③ 평가시험	• [필기시험] 객관식 40문항(문항당 2.5점)	한국발명진흥회	권역별 지정장소에서 시행, 표준교재는 하단 안내 참고
④ 결과발표	• 합격자(평가시험 70점 이상)에 대한 인증서 발급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⑤ 사후관리	• [인증확인서 발급] 증명서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 •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제출 필요	한국발명진흥회	

명인 인증절차 (1급 취득자만 신청 가능)

단 계	내 용	주 체	비 고
① 공고/접수	•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전까지 누리집에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② 응시요건 심사	• [서류심사] 응시요건 검토 (발명교사인증제 1급 보유자 등) • [평가시험] 대상자(응시요건 충족자) 통보		
③ 평가시험	• [구술시험] 주어진 문제에 대한 발표 및 심층면접	한국발명진흥회	
④ 결과발표	• 합격자(평가시험 70점 이상)에 대한 인증서 발급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⑤ 사후관리	• [인증확인서 발급] 증명서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 •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제출 필요	한국발명진흥회	

2023년도 제12회 발명교사 1·2급 인증 시행일정 공고

주요 일정 »

- **신청기간** | **2023. 6. 1.(목) 14:00 ~ 8. 25.(금) 18:00, 온라인접수**
- **응시료** | 없음
-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 2023. 9. 6.(수)
- **평가시험** | **2023. 9. 23.(토) 11:00~12:00** / 4개 지역(서울, 대전, 전주, 부산)
- **합격자 발표** | **2023.10.12.(목),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접수방법 » 및 서류심사

-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內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첨부 제출)**
  - www.kipa.org → 지원사업 → 미래형 발명인재양성 → 발명교사인증제 → 참여신청
    * 크롬 브라우저 사용 (익스플로러 신청불가)
    * 신청페이지는 팝업으로 열리므로, 팝업차단 여부 확인 필요
    * 우편·방문 접수는 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PDF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신청등급	2급 (예비교원)	2급 (현직교원)	1급 (현직교원)
제출서류 목록 (필수)	0. 실적리스트 1. 재학(졸업) 증명서 2. 성적증명서	0. 실적리스트 1. 재직증명서 2. NEIS 인사기록카드 교육이수 부분 또는 개별 교육이수증	0. 실적리스트 1. 재직증명서 2. NEIS 인사기록카드 교육이수 부분 또는 개별 교육이수증 3_1. 발명교육 실무경력 확인서 3_2. 실적경력 증빙서류(위촉장, 확인서, 결과공문, 특허증, 상장, IPAT성적서 등)
공통사항	• **실적리스트 양식 작성 후, 자필서명 필수** • **증빙서류는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개별이수증, 나이스기록 등)** (재학/졸업/성적/재직증명서/지식재산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원본대조필 날인 제외) • **실적리스트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파일명 : 급수(예비/현직교원)+신청자이름 (ex. 2급(예비교원) 홍길동.pdf)**		

※ 명인 : 9~10월에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공고 및 접수, 11월에 평가시험 실시 예정

권역별 문의처 »

소속 지역	문의처	
수도권/강원(서울, 경기, 인천, 강원)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02-3459-2718
중부권/충청(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남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042-821-7663
호남권/제주(광주, 전남, 전북, 제주)	전주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063-281-7153
영남권/부산(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부산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051-500-7333

평가시험 » 표준교재

구 분	1급 교재	2급 교재
교재명	「발명·지식재산 교육의 탐구와 실천」	「발명교육의 이해와 실제」
출제범위(구성내용)	발명과 지식재산 내용학 및 교육학 9개 단원	발명내용학 및 발명교육학 10개 장
교 재 이미지		
기 타	시중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 가능 (교재 문의 : 박문각 02-3489-9451)	

발명교사 인증 유효기간 연장제도 안내

인증 유효기간 연장제도 개요

- **(목적)** 인증 발명교사의 지속적 발명교육 활동 장려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모든 등급(명인, 1·2급)을 대상으로 유효기간 연장제도 운영

  ※ 유효기간 연장은 5년 단위로 필요

- **(대상)**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 '22.12.11 「발명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한 발명교사 인증서를 보유한 자의 인증서는 경과 규정에 따라 그 시행일부터 유효기간을 기산(유효기간 : '22.12.11 ~ '27.12.10)

- **(접수기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접수방법)**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內 유효기간 연장신청(증빙서류 첨부 제출)

등급별 유효기간 연장 기준

- 취득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마감일의 전날까지 선택요건 중 1개 항목 충족해야 함

  ※ 다만,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등급	선택항목(1항목 충족)						비고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실적	지식재산 능력시험	평가시험
명인	30시간 (필수: 집합교육 15시간 이상)	1년	10점	20시간	10점	700점	-
1급				15시간		600점	
2급				10시간		500점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절차

단 계	내 용	주 관
① 공고/접수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 유효기간 연장 시행 공고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 온라인 접수(증빙파일 첨부)	한국발명진흥회
② 연장요건 심사	[서류심사] 등급별 연장요건 검토	
③ 결과발표	연장요건 충족자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서 발급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④ 사후관리	[인증확인서 발급] 증명서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	한국발명진흥회

Q&A

1. 최초 인증시 등급별 집합연수 이수시간은 꼭 채워야 하나요?

▶ 등급별 필요한 집합연수 시간은 (2급) 60시간 중 집합연수 30시간 이상, (1급) 120시간 중 집합연수 60시간 이상, (명인) 180시간 중 집합연수 90시간 이상 으로 각 필요한 집합연수 시간을 반드시 채우셔야 합니다.

2. 실시간 쌍방향 연수도 집합연수로 인정되나요?

▶ 네, 맞습니다. 줌(ZOOM) 등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연수도 집합연수로 인정됩니다.

3. 원격교육으로 수강한 이수시간도 100% 인정되나요?

▶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 아이피티쳐(www.ipteacher.net) 등 원격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이수시간의 50%만 인정되었으나,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원격교육 이수시간이 100% 인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급별 발명교육 이수시간을 원격교육 이수시간으로만 모두 채울수 없으며 반드시 등급별 필요한 집합연수 이수시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4. 발명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은 무엇인가요?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 및 각 시도교육청 주관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 교육, 발명교사교육센터(충남대,부산교대,전주교대)에서 운영되는 직무연수, 한국발명진흥회 원격교육연수원(www.ipteache.net)의 발명교육 직무연수,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발명교육 직무연수 등이 발명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수명에 발명·지식재산·특허 등 연수내용이 발명교육과 관련되어 유추되지 않는 경우, 연수커리큘럼을 함께 제시하여 연수내용 중 발명관련 내용이 소명되면 해당시간만 인정됩니다.
또한, 과학, 수학, 인문, 정보, 영재교육, 저작권교육, 관련 직무연수는 불인정됩니다.

5.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 이전에는 발명교육대상 수상자들은 1급 지원시 응시요건의 서류심사 면제를 받았는데 계속 적용되는지요?

▶ 아닙니다. 고시가 제정되면서 발명교육대상 수상자들도 1급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 이전에는 대학원 발명교육 전공자는 2급 지원시 무시험 인증을 받았는데 계속 적용되는지요?

▶ 아닙니다. 고시가 제정되면서 대학원 발명교육 전공자들도 응시요건을 갖추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발명교사인증제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TEL 02.3459.2718 | **www.kipa.org**

